

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-970호

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10호(2007.09.06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5호(2009.04.02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1-267호(2011.09.1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85호(2012.09.2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-60호(2016.09.06.)로 정비계획변경(경미한변경)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9호(2018.04.05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8-101호(2018.8.16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9-40호(2019.4.25.)로 정비계획변경(경미한변경), 동대문구 고시 제2020-39호(2020.04.2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
2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로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8월 25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2. 8. 25. ~ 2022. 9. 8.(14일)

나. 공람장소 :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

다.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명칭 :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치 :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
- 3) 면 적 : 34,997.3㎡
- 4) 시 행 자 :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- 5) 사업계획 : 공동주택 9개동 761세대(임대 134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등
- 6) 사업시행계획 개략적인 변경 내역

가) 건축물 배치계획

－ 보행자 및 미관 향상을 위한 단지 외부 조경특화

나) 건축물 건축계획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건 축 면 적	6,554.4127㎡	6,498.7541㎡	-55.6586㎡
연 면 적	102,475.6411㎡	111,080.4317㎡	+8,604.7906㎡
건 폐 율	25.2846%	25.0698%	-0.2148%
용 적 율	242.5539%	242.7054%	+0.1515%
주 차 장	888대	1,033대	+145대
기 타	전기차 충전기 35대 설치 관리사무실 및 커뮤니티 면적 확대 세대 창고 설치 등		

다) 단위세대 변경

구 분			전용면적(m ²)		비 고
공급	면적	세대수	기 정	변 경	
임대	39A	50	39.8868	39.9557	+0.0689m ²
	49A	68	49.9400	49.9774	+0.0374m ²
	51B	16	51.5681	51.5802	+0.0121m ²
분양	51A	82	51.3663	51.4261	+0.0598m ²
	59A	308	59.9857	59.9753	-0.0104m ²
	59B	38	59.8154	59.9314	+0.1160m ²
	84A	20	84.8151	84.8377	+0.0226m ²
	84B	79	84.9168	84.8999	-0.0169m ²

라)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

(단위 : 가구)

구분	비대책	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지급	주거이전비지급	비고
변경전	38	111	188	사업시행인가(09.04.02)
변경후	230	110	45	이주단계 세입자 대책 반영

마) 정비사업비 및 자금계획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사업비	252,268,894,083	240,332,556,312	용역비 정산 반영 등에 따른 변경

라. 공람도서 : 생 략 (공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로 같음)

마. 기타사항

- 공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672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람 서류는 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, 관계 법령 검토 및 관련 기관(부서)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